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

- 본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료 전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원문을 파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Tel: 3702-1411)

2015. 5. 3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연 구 제 목	페이지
I. 지방재정 · 정책 (2건)	1.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3
	2.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6
II. 지방세 (2건)	3.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변동 분석	9
	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	12
III. 경제, 일반 (9건)	5.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16
	6.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18
	7. 노면전차(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
	8. 제도와 경제성장: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22
	9. 태양광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24
	10. 가계부채 연착륙의 의미와 필요성	25
	11. 장애인구의 고령화: 실태 및 시사점	27
	12.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	29
	13.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30

분야	연구 제목	페이지
IV. 해외경제 동향(2건)	14.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5월)	32
	15. 중국판 창조경제 ‘대중창업, 만인혁신’ 사상 최대의 창업붐 조성되고 있다	35
V. 법령제·개정 사항(4건)	16. 지방재정위기관리법안	36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	37
	19.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1.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하세정,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라영재 초빙연구위원 (2015. 4)

① 문제제기

- 최근까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는 독립적인 이슈였다기보다는 공공기관의 경영 비효율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만 하면 사라지는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받았음.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가 불과 4~5년 만에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을 위협하고, 정부재정 및 신용도와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자 전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율은 80% 수준을 기록하여, 정부부채나 가계부채 증가율을 크게 넘어섰음. 절대규모 면에서도 2013년 말 기준 523.2조원으로 정부채무보다 8% 높았음. 단순히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의 질도 좋지 않은 편임. 대형 공기업들 상당수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금상환능력도 위험한 수준에 봉착해 있음.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공공기관의 부채 위험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자체적인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하기 시작했음. 수익성이 낮은 공공기관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면, 외부의 도움 없이는 부채의 덩어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공공기관의 법적 소유권자이자 관리·감독권자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무불이행 시 우발부채를 책임져야 하고, 이는 곧 정부재정에 부담과 국가경제에 악재가 될 소지가 다분해졌음. 이에 공공기관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한 현 정부는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를 두 축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고, 강력한 부채감축계획을 시행하였음

② 공공기관 부채관리정책

-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정책에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음. 첫째, 데이터의 한계 상 시도하기 힘들었던 부채유발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정량분석을 시도함. 이러한 시도는 부채유발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부채유발요인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에서는 부채유발요인들을 정량화시켜 부채비율과 부채증가율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였음.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기관 고유사업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용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의 일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극복하려 하였음

1.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하세정,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라영재 초빙연구위원 (2015. 4)

- 정량적 분석은 부채유발요인으로 꼽히는 인자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에 효과적인 도구이기는 하나 데이터의 한계 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대안 마련에도 제한적인 도움만 제공할 수 있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 부채발생요인이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개별기관을 선별하여 부채 발생의 경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인건비로 인해비효율의 논란이 있는 철도공사를 경영비효율의 심층분석 대상 기관으로, 정부정책사업의 심층분석 대상 기관으로는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을 수행한 수자원공사를 요금규제의 문제점은 미수금 때문에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가스공사를 분석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음.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철도공사는 다각도에서 동종의 민간기업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여기에 추가하여 성과와 무관한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노동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성과와 연계된 직급제와 보수체제와 같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수자원공사 사업진행단계별 문제점

-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법적,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늘 이루어져 왔던 일임.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사례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거나 재무 부담이 큰 사업을 재정조달의 명확한 책임분담 없이 공공기관이 떠맡는 행태의 사업수행방식이 문제가 된 것임. 이러한 폐해에 대해 우선 문제가 있는 사업을 걸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특히 조사대상의 예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책사업 수행에서 부채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주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여 구분회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부의 정책을 대신 수행할 경우, 정부와 기관 사이에서 재정조달 방법을 강구하고, 합의한 후에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함. 넷째, 정책사업 수행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무부처, 기재부, 공공기관과 다수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사업 수행 시 공공기관의 업무분담과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정책사업의 효과를 사업 중간이나 사후에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독립적인주체가 사업과정을 평가하는 제도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살펴 본 요금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하세정,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라영재 초빙연구위원 (2015. 4)

첫째, 불명확한 원가산정기준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관의 원가산정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둘째, 요금산정 절차상에서 주무부처와 기재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 요금조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큼. 셋째, 명확하고, 객관적인 요금산정 방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시할 정도로 정부의 요금결정 재량권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정치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음

4 결론

- 일련의 부채와 관련된 문제점과 다급하게 진행된 대책마련과 시행을 겪으면서, 공공기관들은 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방만한 경영문화에도 어느 정도 문제의식과 반성을 느끼게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부채발생 재무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라고 봄.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환기효과는 그 자체로는 오래 가지 못함. 현실에서 부채관리에 대해 기관들이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권자인 정부가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하지만, 정상화 대책은 아직까지는 장기적 관리대책으로서의 기능은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명칭에서 판단컨대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면, 수명을 다한 정책으로 치부되어 버리기 쉬움.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완전한 자율성과 책임을 부과하지 못할 바에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본 보고서의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함

2.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한국지방세연구원 KILF REPORT,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2015.5)

① 문제제기

- 지역발전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는 공적영역이며 국가의 중요한 재분배 수단 중 하나임. 최근 들어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단위의 재분배가 중요시되어 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우선순위에서도 복지지출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정부의 지출규모나 구성만으로 볼 때에는 지역발전 관련 재원은 감소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선진국들의 추세를 보면, 정부재정 투입규모가 감소한다고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을 소홀히 다루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오히려 글로벌 경기악화 이후 EU 단위의 낙후지역 지원은 증가 추세이며, 소득격차의 불안정이 심화되자 미국은 그간 하지 않았던 연방 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음. 영국 또한 정부직접 지원 방식의 지역발전 재원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런던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콘트럴 타워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주요국의 지역정책 실험은 계속되고 있는 중임. 정부재정의 투입규모만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운영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② 지역발전 관련 재원 규모산정과 지역발전 재원 성과측정

-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예산 자본지출, 총자본형성, 자본스톡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여 보았음. 본 분석에서는 지역발전재원 성과는 궁극적으로 인구이동에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실증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발전 관련 재정지출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음. 본 분석은 인구이동이 취업, 결혼 등 이른바 ‘시장효과’가 주된 요인임을 전제하고, 나아가 시장효과에 상승효과로 작용했을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음.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이동률과 재정 정책적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인데, 소득수준 상승, 경기침체, 주택가격 불안정성 심화, 고령화 심화 등인구이동률 하락 요인이 다양한 가운데 지방재정지원 및 지역발전지원 역시 불필요한 이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는지를 보고자 한 것임. 보조금제도의 의의는 해당 지역의 재정력 개선을 통한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이주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본래의 거주지에서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음.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에서 자치단체 예산서상 반영된 자본지출과 국가직접지원성격의 자본스톡 모두 인구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2.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한국지방세연구원 KILF REPORT,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2015.5)

타났음. 따라서 그간의 지방재정지원을 통한 자본시설 확충은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방안

-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가늠해 보고자 함. 먼저, 지역발전과 관련해 ‘부처 간 지역발전정책관련 보조금 정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지역발전정책과 별개로 정부는 재정개혁과제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나 ‘PAYGO’의 정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조금 중복사업은 일부 정리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예산관리시스템 하에서 부처 간 중복 보조금에 통폐합 논의 차원에서의 PAYGO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나마 실현가능한 부처 내 PAYGO는 사실상의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시스템적으로 관련부처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부처 간 PAYGO’가 가능한 보조금은 지역발전계정 내 포괄보조금(Earmarked-block grants)이 유일함. 현행 광특회계(지특회계) 내 지역개발계정의 실링예산 사업은 재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처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안행부등 매우 다양한데 이들 부처 간 보조금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서는 재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개발계정 내 포괄보조금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복 보조금 통폐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또 다른 근본적인 발전방안으로는 기존 지역 간 균형발전 재원의 중요한 축이었던 일반교부금인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조건부보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임. 지역발전 재원 활용에 있어서 형평화 보조금과 함께 사업목적을 분명히 하는 조건부 보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 기초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세수여건 불안정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체적으로 의지에 따른 재정지출규모가 축소된 것이 사실임. 또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는 지방소비세 확대나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같은 ‘일반보조금 증가’는 더더욱 현재와 같은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를 고착시킬 것으로 보여짐.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이 나아지고 이를 통한 과표상승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

2.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한국지방세연구원 KILF REPORT,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2015.5)

에 대한 공공재 가격기능인 지방세율을 차별화할 수 있는 지방세수 환경이 변화되어야 함.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지방자치의 성숙도는 지역 간 차별화를 통한 건전한 경쟁구도의 실현으로부터 가능함.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중앙부처의 top-down식 지역발전정책 구상과 부처별 해당 국고보조사업 위주의 지역발전정책 수립관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자치단체는 부처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간 공공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지역주민은 지방세율의 차이로 평가하는 유기적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발전정책 기조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재분배적 특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은 유지하되, 공간권역과 자원배분권역을 일치시켜 재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3.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변동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통권제21호(2015.5). 홍성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1 담배소비세 현황

□ 담배소비세 개요

-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대해 과세하는 특·광역시세 또는 시·군세로서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 현행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은 피우는 담배와 씹거나 머금은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구분되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 피우는 담배는 제1종 쫄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쫄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로 세분됨

· <표 1>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 율
피우는 담 배	제1종 쫄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쫄련	1g당	103원
	제4종 각련	1g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1㎖당	62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 담배소비세 세수변동

- 지방세 총세수는 2004년 34조 2,017억에서 2013년 53조 7,789억으로 약 57.3%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2004년 2조 7,223억에서 2013년 2조 7,844억으로 불과 2.3%만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담배소비세의 성장률은 다른 세목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총세수 대비 담배소비세 비중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가 큰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사회 전반의 금연 추세로 인해 줄어 든 탓도 있겠으나, 실질세율이 계속 낮아진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표 3>에서는 2005년 세율인상(510원→641원)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로 약 10%의 세수가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담배소비세 또는 담배값 인상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음

· <표 3> 담배소비세 세수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지방세		342,017	359,774	412,937	435,243	454,797	451,678	491,598	523,001	539,381	537,789
담배	세수 (비중)	27,223 (8.0)	24,479 (6.8)	27,027 (6.5)	27,610 (6.3)	29,204 (6.4)	30,107 (6.7)	28,755 (5.8)	27,850 (5.3)	28,812 (5.3)	27,844 (5.2)
	증감	-	↓ 10.1	↑ 10.4	↑ 2.1	↑ 5.7	↑ 3.1	↓ 4.5	↓ 3.1	↑ 3.5	↓ 3.4
담배소비량		53.4	38.2	42.2	43.1	45.6	47.0	44.9	43.4	44.9	43.4

※ 2005년 세율인상(510원→641원)으로 세수감소('04년은 공표효과로 세수증가)

3.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변동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통권제21호(2015.5). 홍성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② 담배값 인상액 배분기준

- 정부는 2003년 5월 23일 국무회의시 복지부장관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함으로써 당시 제세부담금에 대한 담배값 인상분 500원의 배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되었음
 - 담배값 인상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인상되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업체 등의 원가 및 이윤으로 각각 10%에 해당하는 91원이 배분
 - 다음으로 담배값 인상 목적을 고려하여 잔여 금액 409원(500원-91원)의 50%인 204원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배분하고 그 나머지 205원 중에서 엽연초 생산안정화기금으로 5원, 폐기물부담금으로 3원을 배분.
 - 마지막으로 잔액 197원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131원과 66원으로 1:0.5 비율로 배분

· <표 4> 담배값 인상액 500원 배분 현황 (단위 : 원 %)

구분	총계	소계	제세부담금						원가 이윤
			지방세		국세 및 부담금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엽연초생산 안정화기금	폐기물 부담금	부 가 가치세	
총 전	2,000	1,111	510	255	150	10	4	182	889
인상후	2,500	1,565	641	321	354	15	7	227	935
인상액 (인상율)	500 (25)	454 (40.9)	131 (25.7)	66 (25.9)	204 (136)	5 (50)	3 (75)	45 (24.7)	46 (5.2)

-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인해 연간 사망자가 5만 8천명에 달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값 2,000원 인상을 비롯하여 금연치료 집중지원, 경고그림 삽입 등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담배값은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는데 이에 대한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담배값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는 부가가치세로 182원이 배분되고, 나머지 금액 1,818원에 대하여 그 동안 담배값 인상액의 약 10%를 제조업체의 원가 및 이윤으로 배분하던 관행에 따라 12.8%에 해당하는 232원을 원가·이윤으로 배분
 - 다음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594원을 배분하였으며, 그 나머지 992원을 5:5 비율로 배분함에 따라 지방재원은 488원, 중앙 재원은 504원이 되었음. 지방 재원 488원은 다시 3:1 비율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 366원, 지방교육세 122원으로 배분되었고, 중앙재원은 건강증진부담금 487원과 폐기물부담금 17원으로 배분

3.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변동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통권제21호(2015.5). 홍성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③ 시사점

- 2005년과 2015년의 담배값 인상액에 대한 지방과 중앙 재원의 배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여기에서 2005년에는 담배값 인상액 중 제세부담금 454원의 43.39%가 지방세로 배분되었으나, 2015년의 경우 1,768원 중 488원이 배분되어 27.6%로 그 배분율이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표 6> 담배값 인상액의 제세부담금 배분 현황 (단위 : 원 %)

구분	인상액	소계	제세부담금						평가이윤
			지방세		국세 및 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업연초기금 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2005년	500	454	131	66	204	5	3	45	46
		(100)	(28.86)	(14.54)	(44.93)	(1.1)	(0.66)	(9.91)	
		(100)	(43.39)		(56.61)				
2015년	2,000	1,768	366	122	487	17	594	182	232
		(100)	(20.70)	(6.90)	(27.55)	(0.96)	(33.60)	(10.29)	
		(100)	(27.60)		(72.40)				

* 2005년은 업연초생산안정화기금, 2015년은 개별소비세

- 또한, 2005년 담배값 500원 인상 전후와 2015년 2,000원 인상 후의 제세부담금 중 지방과 중앙 재원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지방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68.86%에서 담배값 500원을 인상한 2005년에는 61.47%로, 2,000원을 인상한 2015년에는 43.7%로 급감하였음
- 정부는 2003년 5월 23일 국무회의시 복지부장관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함으로써 당시 제세부담금에 대한 담배값 인상분 500원의 배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되었음

· <표 7>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제세부담금 변동 현황 (단위 : 원 %)

구분	계	지방 재원			중앙 재원				
		소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소계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업연초기금 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2004년	1,111	765	510	255	346	150	4	10	182
		(68.86)	(45.91)	(22.95)	(31.14)	(13.50)	(0.36)	(0.90)	(16.38)
2005년	1,565	962	641	321	603	354	7	15	227
		(61.47)	(40.96)	(20.51)	(38.53)	(22.62)	(0.45)	(0.96)	(14.50)
2015년	3,318	1,450	1,007	443	1,868	841	24	594	409
		(43.70)	(30.35)	(13.35)	(56.30)	(25.35)	(0.72)	(17.90)	(12.33)

* 2005년은 업연초생산안정화기금, 2015년은 개별소비세

- 위와 같은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인 담배의 가격 인상액은 지방자치단체 보다 중앙정부에 더 많이 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일부)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와 거주성판단을 중심으로 -

2015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2015.5.27.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국외원천소득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최근 정부는 거주지주의의 핵심적인 도구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수정하였음. 이는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원천지주의에 입각한 과세제도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음. 그런데 다음과 같이 그 세액공제요건을 강화하여 우리 세제는 세계적인 추세는 더욱 거리를 갖는 제도로 변화하게 되었음

【세액공제한도 설정】

- 2015년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일괄한도 방식이 폐지되고 국가별한도 방식만 인정됨(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경과조치로서 개정 조항 발효 이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함. 국가별한도는 그 한도를 둘 논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매우 곤란한 방식임. 저세율국가 원천소득과 고세율 국가원천 소득간에 원천지조작을 통해 저세율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실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음. 오히려 미국의 제도처럼 이동성소득과 비이동성소득으로 나누어 각각 한도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이동성소득은 저세율국으로 임의로 소득원천지를 이전하여 한도만 늘리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임. 비이동성 소득은 EU등 주요국가에서 원천지주의적인 과세를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을 그간 10%에서 25%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였음. 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 10%이상 25% 이내 지분만 있는 경우 단순한 지분투자자에 따른 국외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점이 있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 EU국가의대부분이 10% 지분율을 경영참여 소득면제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적 동향과는 동떨어진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음. 아울러 해외손회사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해외자회사가 지점방식으로 제3국 진출한 경우 여전히 국내모회사의 간접납부세액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남아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해외자회사의 제3국 진출 시 진출방법에 따라 다른 세부담이 나타나도록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음. 해외손회사의 간접

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일부)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와 거주성판단을 중심으로 -

2015세법개정 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2015.5.27.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폐지는 정부가 국내에 해외손회사 까지 둔 글로벌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아이러니한 것은 아래의 특정외국법인세제상으로는 해외자회사가 지주회사로서 그것의 자회사를 둔 경우에 대해서는 비록 수동소득을 가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임. 결국 글로벌지주회사는 해외에 두라는 것이 됨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세분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토지부분이 제외된 구조물임. 따라서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은 과세방식과 과세대상이 다르다.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이 일괄적으로 과세되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됨.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이 주택과 동일한 의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별도 합산토지)와 건축물이 합산되어야 함

□ 특정외국법인세제

- “특정외국법인세제”란 거주지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곳에 소득을 거류시키는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세제임. 이는 미국 Kennedy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구미와 일본등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일본의 외국자회사합산세제를 참고하여 현행의 특정외국법인세제를 구축하게 되었음
- 우리 제도는 저세율국의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을 국내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는 방식임. 일본제도적인 요소와 미국제도적인 요소가 고루 발견됨. 그런데 우리 제도 중에는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서 이동성 소득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영역이 존재함. 특정외국법인이 경과세국 또는 경과세지역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국조법 제18조 제1항)이 매우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임. 이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것인데, 일본이 외국자회사합산세제 이외에 다른 보완제도를 두고 있어 실제 외국자회사합산세제에 의한 과세가 실제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과 대조됨.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적인 과세를 하고 있는 EU국가들의 사례를 보아야 할 것임

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일부)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와 거주성판단을 중심으로 -

2015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2015.5.27.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거주성 판정기준

- 국외원천소득과세와 관련한 위에서의 논의는 거주성 판단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한국 거주자가 되면 모든 재산과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그것을 위해 정보를 캐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납세자들은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는 선택 여부를 고민하게 됨. FIU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보내는 제도개선 후 현금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임. 국외원천소득과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거주성 판단기준을 확대한다면 사람들은 한국의 거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임. 현실세계에서는 거주지는 선택의 대상임. 실제 거주자가 되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자를 늘리기 보다는, 우리나라에 가까이 하는 자를 줄이는 결과만 낳을 가능성이 큰 것임. 이는 다른 나라들이 거주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느슨하게 유지하거나 매우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 나라에서 거주자가 되지 않고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됨
- 정부는 개인의 거주성 요건을 “1년 이상 계속 거주”에서 “183일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하였음. 이 법 개정은 2015년부터 적용됨. 법인에게서는 2006년부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도 내국법인으로 봄. 개인과 법인 각각 거주자가 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에 관한 위에서의 필자의논의가 제도적으로 관철되면, 거주성 요건의 완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반감될 것임. 그러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해 원천지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거주성 요건의 완화는 그만큼 국내경제활동과 관련을 맺는 외국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멀어지게 하는 효과가 클 것임

③ 결론

- 우리나라 세제는 완전한 형태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과세구조를 지니고 있음. 국외자산양도소득 및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과세제도를 두고 있을 뿐임. 증여과세상으로도 국외증여재산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음. 최근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까지 가동하여 안팎으로 최고 있음. 미국의 FATCA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나라 거주자의 미국내 경제활동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음.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자가 되면 전세계경제활동에 대해 모두 정부가 간여한다는 제약을 가하는 셈임

4.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일부)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와 거주성판단을 중심으로 -

2015세법개정 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2015.5.27.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오 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응능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조세정의를 이해한다면, 그 조세정의차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임. 조세 제도는 그것을 강화하면 할수록 민간의 경제를 위축하게 함. 다른 국가들은 느슨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만 강경한 제도를 구축해가고 있다면, 우리 제도는 더욱 실효성을 잃게 되어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우리를 제외한 OECD국가 어느 나라도 두지 않고 있는 외국 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 조세특례요건이 엄격해지고 특 례효과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것임. 아무리 BEPS Project가 시동되어 국제적 조세회피를 규제하자는 움직임 이 있지만 주요 국가들의 실제 제도는 그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임
- 오히려 원천지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는 충실하게 하고 국외로의 진출에 대한 과세 상으로는 간명한 원천지주의로의 전환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여야 할 때인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를 완화하기만 할 경우 우리나라 단위의 사업만을 구상하는 기업이나 자본이 들어오겠지만, 국외원천 과세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단위사업을 구상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임. 완전한 형태의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면서, 2006년과 2015년의 세법 개정에서 보듯이 거주자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의 태도가 국제적으로 보아 이례 적인 것임. 현재로서는 거주지주의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하게 실행 되지 않고 가급적 원천지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채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점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현행의 국가별 한도방식에서 미 국식의 소득종류별 한도(이동성 소득과 비이동성 소득)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그 적용 범위를 2014년말 개정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함. 특정외국법인세제는 우리 제도 수립에 영향을 준 일본의 제도를 폭 넓게 연구하는 등으로 원래의 제도취지와 국제적인 과세동향을 고려하여 실질적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거주성 판정과 관련해서는, 비록 우리 정부 의 최근의 선택이 거주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어서 국제적인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지만 존중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출국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5.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2015.5)

①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화장(火葬)이 보편화됨에 따라 화장로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설치에 어려움 직면
- 경기도에서도 화성시에 5개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웃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추진 난항
- 특히 화장시설의 대기환경 영향을 쟁점으로 지역간 갈등 문제로 대두
- 이 연구에서는 쟁점 사안인 환경문제, 환경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지침으로 사용

② 연구범위 및 내용

-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으로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함. 4014년 자료가 없을 때는 가능한 한 최신자료를 사용
- 주요 연구내용
 - 화장시설의 설치, 운영현황(3개소)
 - 화장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의 유형 및 원인 검토
 - 배출구의 대기오염 농도 분석
 - 배출구의 다이옥신 농도 분석
 - 화성시 예정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주변 확산영향 분석
 - 화성시 예정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 화성시 예정시설의 확산범위 및 확산농도 분석
 - 화장시설의 환경관리 방안 검토제시
- 이 연구를 통하여 화장시설 설치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대기환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하고, 향후 장사시설 설치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의 협의 및 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분석 결과

- 최근 들어 화장(火葬)이 보편화 되면서 지방정부마다 화장로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어려움에 직면

5.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2015.5)

- 경기도에서도 화성시에 5개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웃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추진에 난항
 - 대기환경 문제, 지가영향 등을 쟁점으로 지역간 갈등 문제 대두
- 이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유해물질 등의 발생 및 주변 영향에 대하여 분석 검토한 결과, 주변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화성시에 입지할 예정인 화장시설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규모 정도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였을 때, 소규모 배출시설인 5종 정도에 해당
 - 기상 영향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분석한 결과 주변 인구밀집 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역시 기존 운영시설에 대한 실측자료로 미루어 볼 때 환경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

4] 정책 제언

- 화장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통상적인 소규모 소각시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 그러나 지역주민의 기피시설임을 감안하여 가장 최신의 최적방지시설(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설치·운영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배출구에 대기오염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굴뚝 측정장치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전광판과 인터넷 등에 실시간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
- 감독기관은 시설운영, 환경관리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주민 참여 및 공공감시기구 운영

6.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KDI. 「KDI Focus」. (2015.5)

① 국민연금기금 현황

- 국민연금기금은 2013년 말 484조원으로 이 중 연금보험료가 333조원, 기금운용수익금이 150조원으로 구성
 - 시가 기준으로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2.7%(코스피의 36.6%), 채권시장 발행 잔액의 28.3%에 해당
-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재 제도 틀을 유지할 경우, 적립금이 2035년에 GDP 대비 49.4%, 2043년 2,561조원으로 최대 규모에 도달하고, 2044년 수지 적자가 처음 발생한 후 불과 16년 만인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

적립금 규모 예측추이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2013. 10.

②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문제점

- 국민연금 재정목표 부재로 기금운용분야의 역할범위 미설정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지향점이 제시되지 않아 기금운용 주체들에게 수익성과 안정성 조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어 금융환경에 필요한 민첩하고 신축적 운용 곤란

6.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KDI. 「KDI Focus」. (2015.5)

- 전문성 부족
 -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표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결정을 내리기 곤란
- 책무성 부족
 - 의사결정과 감시주체의 미분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발의부터 승인·통제하는 역할까지 수행
 - 책무성 구조의 방향성 모호: 기금운용본부와 자산운용부서의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리스크 관리부서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독립성이나 책무성 측면에서 문제
- 평가체계의 문제점
 - 국민연금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하는 형식이지만 위탁주체인 이사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움

③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향

- 최적의 운용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고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이들의 역할범위를 사전에 명시하는 한편, 책무성을 강화하여 기금운용자가 사익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 방지 필요
- 민간금융전문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설화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시킨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 이사회로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기금운용위원회 정비 필요
- 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함한 기금운용 의사결정 전반을 금융부문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 감독주체가 감독하게 할 필요
-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무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재정의 할 필요 있음

7. 노면전차(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985호. (2015.5)

① 노면전차의 이해

- 노면전차의 정의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서 도시철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서 “노면전차(tram)란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로 규정
- 노면전차의 장점
 - 버스의 속성과 독립된 레일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기능이 혼합
 -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 없어 경전철 등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승객 수요에 맞춰 운행차량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노면전차의 단점
 - 버스에 비해 노선의 자유로운 설정이나 변경에 제약
 - 버스 전용차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가의 교통수단

② 노면전차 운행 및 추진 동향

- 해외도시 운영사례

해외 노면전차 도입 현황

기능	사례도시
간선버스로부터 전환·대체	쿠리찌바, 리옹
도시철도의 지선 기능	로마, 마드리드
철도 네트워크의 보완	파리, 로마
도심지구의 유람 및 관광	달라스, 로마, 보르도, 니스
도심재생의 촉진 수단	더블린, 포틀랜드

자료: 김승준·이유화, 『서울형 신노면전차 기능 및 위계정립 연구』, 서울연구원, 2010, 재구성

7. 노면전차(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985호. (2015.5)

○ 국내 지자체 추진사례

- 2010년 철도기술연구원이 무가선 노면전차의 개발을 성공시키면서 지자체에서 도입 논의 본격화
- 2015년 4월 현재, 대전, 수원, 위례 신도시 등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 성남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검토 중

지자체 노면전차 추진동향

(2015년 4월 기준)

구분	현 단계	재원 계획	목표연도
대전	수요예측 등 연구용역 중	예타 후 재정사업	2025년
수원	예타 진행 중	추진방안 검토 중	2018년
위례	도시철도 기본계획 심의	민자사업	2017년

③ 입법동향과 법·제도적 과제

○ 입법과제

- 2012년 12월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되었으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노면전차의 운행 자격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

○ 법·제도적 과제

- 현행법 하에서는 도로에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차는 운행할 수 없고, 철로로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철도안전법」 제48조) 도로와 궤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 필요
- 노면전차 신호와 표지, 통행우선순위, 전차 속도 등 노면전차가 도로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이 자동차 이용법령과 상충하지 않도록 정비 필요
- 면허체계, 사고발생시 조치방법 등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방안 강구 필요

8. 제도와 경제성장 :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2015.5)

1 연구 배경

- 이 보고서는 NIE 성장론의 요지와 특징을 소개하고, 국제 횡단면 실증분석을 통해 제도의 경제성장 기여효과를 추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활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방법론으로는, 2006~2013년 기간에 Forbes 2000대 기업이 소속된 나라 67 개국을 대상으로 노동과 자본의 기술적 전환함수로 정의되는 통상적인 성장 함수에 제도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음

2 연구 내용

- 제도의 성장 기여도, 투자보다 50% 더 큼
 - 분석결과, GCI 제도 지수, 즉 제도 경쟁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일관되게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변수를 추가했을 때 인적 자원과 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크게 떨어짐. 그리고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은 투자, 인적 자원의 탄력성보다 높음
 - 이 결과는 성장을 촉진하려면 물적 투자의 확대보다 제도 혁신이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함. 투자 한 단위 늘리기 보다는 제도 한 단위 개선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50%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보다는 생산과 투자, 교환, 거래의 조직화에 경제주체의 창의적 역량 발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할 것임
- 제도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때 도달가능한 성장률은?
 - GCI 평가에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임. OECD와 상대적 격차는 2008년 약 3%에서 2014년에는 31%로 확대되었음
 - 2006~2013년 기간 중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OECD에 평균 16% 뒤쳐졌음
 - 만약에 2006~2013년 기간 중 한국의 제도 지수가 OECD와 같았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는 추가 전제 하에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을 적용하면 한국경제는 22.9~26.2% 더 성장할 수도 있었음
 - 이 기간 실제 성장률이 약 4%였으니 만약에 제도 경쟁력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더라면 5% 성장률도 가능했었다는 의미임
 - 문제는 제도 경쟁력의 열위로 인한 성장 기회의 일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임

8. 제도와 경제성장: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2015.5)

- 2014년도 기준으로는 한국의 제도 지수가 OECD 수준에 이르려면 지금 보다 30% 이상 개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제도의 성장 기여도 1.6을 곱하면 2014년도 제도 경쟁력 열위로 인한 성장 기회 일실 비율은 50%까지 늘어남
- 규제는 생성·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적응적 효율이 관건
 - 제도가 성장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제도의 개념이 워낙에 넓어서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성장에 효과적인 제도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GCI 공적 제도 16개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고 각 변수의 탄력성을 추정, 비교하였음
 -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7개에 대한 성장률 탄력성 추정결과는 ① 정부지출 낭비(탄력성, 1.15), ② 법체계효율성(논쟁해결측면, 0.94), ③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측면, 0.90), ④ 정부규제 부담(0.78), ⑤ 공공자금 전용(0.67), ⑥ 사법부의 독립성(0.56), ⑦ 정치인에 대한 신뢰(0.50)의 순서를 보임
 - 여기에 2014년 기준으로 OECD와의 격차를 감안해서 제도 요인별 성장기여 예상효과를 추정하면, ①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측면; 성장률 상승효과 44%), ② 공공자금의 전용(30%), ③ 정치인에 대한 신뢰(29%), ④ 사법부 신뢰(27%), ⑤ 법체계의 효율성(논쟁해결측면; 26%), ⑥ 정부지출 낭비(17%), ⑦ 정부규제 부담(5%) 순서로 나타남
 - 그러나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측면) 개선의 예상 효과는 매우 높음. 이 결과는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규제가 생성되는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만한지, 규제 집행상의 재량과 정실(favoritism)이 제대로 통제되는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발 맞춰 규제 또한 적응적 진화하는지가 규제의 총량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함

③ 연구의 한계와 보완과제

- 이 보고서에서는 제도의 성장 촉진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않았음. Hall & Jones(1999)에서처럼 제도의 차이가 세계 각국의 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인지 별도의 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제도 연구가 실용적 가치를 더하려면 통계적 실증분석 외에도 제도 실패(institutional failure) 사례를 발굴하여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임

9. 태양광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2015.5)

1 주요 발전원으로 부상한 태양광

- IEA는 2050년 태양광이 주요 발전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이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태양광은 가까운 미래에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지난해 태양광 발전은 전세계 발전량의 1% 정도를 차지했음. 2020년경에는 태양광을 통해 3%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많지 않은 생산량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 저유가 현상을 세계석유생산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셰일오일이 주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
- 더욱 주목할 것은 이러한 모습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임

2 태양광 발전 성장 전망

- 저유가 기조의 지속과 각국의 보조금 축소 등 환경은 태양광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것은 우선, 태양광 자체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임
- 태양광의 모듈가격은 지난 40년간 거의 100분의 1로 하락했으며 최근에는 폴리실리콘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평가 인하뿐 아니라, 원재료 사용량의 절감, 기술 혁신의 가속화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은 화석연료의 발전단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더해 적합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도 태양광 부문의 투자 확대의 요인이 되고 있음. 수요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음
- 원전사고와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 등으로 일본 중국 등이 태양광 설비를 급격히 늘리고 있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일조량은 풍부하나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들이 오일머니의 추가 확보, 전력 접근성 제고 등의 이유로 시장을 키워가고 있음
- 특히 아프리카, 인도 등 전력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ESS와 연계된 독립형 분산발전 시스템이 확산된다면 수요는 더 빨리 커질 전망이다

3 시사점

-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발전원 간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음
- 이제까지의 발전산업의 생태계가 바뀌고 에너지의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가격 체계, 가격수준,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세계의 전력산업은 이미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음

10. 가계부채 연착륙의 의미와 필요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2015. 5)

① 최근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으로서 안심전환대출 시행됨

- 최근 정부는 2011년부터 추진해온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변동금리의 고정금리로의 전환 및 만기일시상환의 분할상환으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음
- 이러한 안심전환대출의 의미와 그 공과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출발점은 안심전환대출이 다름 아닌 가계부채의 '연착륙' 대책이라는 점임

② 이러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들의 점진적인 부채상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부채의 규모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 때 기본적인 대응방향은 자명. 바로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 첫째, 채무자들의 부채상환 능력과 의지를 높임으로써 부채 축소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둘째, 이에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법도 있음
- 즉 전자는 채무자들이 스스로 갚아나키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에 갚을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임

③ 하지만 사적 채무에 대한 공적 개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부채의 적극적인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이란 차입조건 또는 상환조건 의 완화, 즉 금리를 낮춰주는 것일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른 비용은 안심전환대출에서는 은행(주주)과 주택금융공사(정부)가 같이 부담한 셈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됨
- 채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지게 된 부채를 해결하는 데 왜 은행이나 정부가 부담을 져야 하는가라는 지적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과 정부의 지원으로 혜택을 본 계층이 서민과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이라는 비판도 있음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의 거시 경제적 잠재 위험을 감안할 때 정부개입은 적절

- 이러한 비판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거시경제적 위상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임
-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이유는, 특정한 개인의 연체나 특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나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거시경제적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10. 가계부채 연착륙의 의미와 필요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2015. 5)

⑤ 아울러 고정금리로의 전환과 동시에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

-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관건은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는 것임.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책금리를 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계속된다면,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함

⑥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으로의 전환 효과는 외견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정책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 중 이미 원금상환중이었던 대출의 비중은 40.2%, 거치식으로 아직 원금상환을 시작하지 않은 대출은 35.7%, 그리고 기존 만기일시상환대출의 비중은 24.1%를 점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미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다름아닌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그 효과가 너무 커도 곤란함

⑦ 따라서 '연착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급격한 부채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음

- 가계대출의 분할상환을 촉진하는 정책은 부채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계의 저축률을 높이는 정책이고 소비성향을 낮추는 정책임
 - 따라서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소비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함. 즉 분할상환을 통한 부채축소는 필요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소비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⑧ 결론적으로 분할상환 여력이 없는 계층의 잠재부실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

- 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가계의 소득여건이나 경기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실화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 중에서 안심전환대출 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상환 여력이 없어서 신청조차 못한 계층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금은 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한 바 있는 한계계층의 부채 부담을 보다 직접적으로 완화해줄 수 있는, 부채를 줄이는 둘째 방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음

11. 장애인구의 고령화: 실태 및 시사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278호 (2015-10) 발행일 : 2015. 04. 20

① 연구 배경

- 장애인 대상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요대상이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른 장애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복지시설의 확충,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확립, 그리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함

② 장애인에 대한 연령적 구분 및 개념정의

- 일반적으로 비장애 노인은 65세를 기준으로 연령적 구분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합 될 수 있는 수준의 연령적 구분이 필요함
- 장애노인을 정의하는데 있어 연령이외에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구분과 이러한 구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임
- 장애노인은 크게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와 노화과정 장애(disability with aging)로 크게 구분 할 수 있고, 이들 집단은 장애특성 및 욕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함

③ 장애노인의 증가와 장애발생 시기

- 최근 장애인의 고령화는 일반인구의 고령화에 비해 2~3배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중 50세 이상 장애노인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현재 71.1%에 이르고 있으며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와 같은 내부장애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장애가 일찍 발생한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장애노인의 외부 도우미 필요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기에 장애를 경험하는 인구의 외부 도우미 필요욕구가 크게 나타남
- 장애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장애기간이 오래될수록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음
- 50세 이상 장애노인 중 발달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12.8%에 불과하고, 청·장년기에 장애가 발생(30.5%)하거나 고령기에 장애가 발생(54%)하는 것으로 나타남

11. 장애인구의 고령화: 실태 및 시사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278호 (2015-10) 발행일 : 2015. 04. 20

④ 장애노인의 생활만족 및 외출 특성

- 늦은 시기에 장애를 경험하는 장애노인일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발생 시기별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령기에 장애를 경험하는 장애노인일수록 전혀 외출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전혀 외출하지 않는 인구가 3.3%(50~64세), 5.2%(65~79세), 15.8%(80세 이상)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거의 매일 외출하는 인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였음
 - 고령기에 장애를 경험하는 장애노인의 경우 전혀 외출하지 않는 인구비율은 7.1%로 가장 높아 장애가 고령기에 발병한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외출의 어려움이 장애가 이른 시기에 발생한 장애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⑤ 장애노인의 경제적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

- 장애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발생시기가 발달기 일 때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급자 비중도 장애기간이 길고 장애가 일찍 발생할수록 높음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나,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장애노인 대상 정책은 장애노인에 대한 개념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임
 - 장애노인에 대한 구분은 조기노화 및 이차적인 장애발생과 같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노인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구분과 우선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장애노인의 증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장애노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애노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높은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확립 필요
-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설정 필요

12.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274호 (2015-06) 발행일 : 2015. 03. 02

① 연구 배경

- 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임시일용직, 실업자,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에 사회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②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수준 현황

- 삶의 질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삶의 질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은 낮게 나타남
- 가구유형별 행복수준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 노인이 있는 가구,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실업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있는 가구는 낮게 나타나고, 아동이 있는 가구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개인특성별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가구주가 비가구주보다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남
- 경제활동별 행복수준은 상용직 > 고용주 및 자영자 = 비경제활동인구 > 임시일용직 > 실업자 순서로 나타남
- 직종별 행복수준은 관리 전문직 > 사무서비스직 > 숙련 기술직 > 비경활 및 실업자 > 단순노무직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행복수준을 보이고 있음

③ 시사점

- HDI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이보다 다양한 지표를 포괄하고 있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삶의 질 지수는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OECD 등의 종합 행복지수에서는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주관적 인식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무게 중심이 기본적 조건(기대수명, 교육, GNI) 개선에서 이제는 사회정책 등으로 삶의 질 영역과 주관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개선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
- 국가의 임무는 객관적 삶의 조건이나 주관적 안녕의 상태가 좋은 '안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사회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가구특성별로 행복수준이 낮은 집단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 노인이 있는 가구,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실업자가 있는 가구, 신용불량자가 있는 가구, 비자가가구 등임
 - 개인특성별로 행복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인, 임시일용직, 실업자,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임

13.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282호 (2015-14) 발행일 : 2015. 05. 25

① 연구 배경

- 복지자원의 관리 표준화 이후,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보유한 정보의 적극적 공개가 필요함
- 복지자원 관리에 대한 최근의 관심 증가를 고려하여, DB화된 복지자원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문제점, 개선내용 및 개선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②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 현황

- 공공영역 복지전달체계에서 사례관리가 도입되면서 복지자원에 대한 관리가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도 통합적 자원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
- 지역사회 단위의 체계화, 표준화된 복지자원 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 정보 이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 복지자원 통합DB의 구축 이후 복지자원 대비 활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개선을 요함
- 그간 축적된 자원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조 및 사용 환경 진단 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된 복지자원 통합DB는 제공주체 중복 제한, 자원분류체계 개편, 제공서비스명 도입, Stock 관리 기능 도입, 커뮤니티 기능 등을 도입하였음

③ 사례관리 지역사회와 복지자원

- 2008년 공공영역 복지전달체계에서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도입되면서, 복지자원의 관리 역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
-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관리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복지자원 정보 관리의 목적은 검색 용이성 확보, 자원 현황 진단, 자원 사후관리의 체계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지역사회 단위 복지자원 정보는 사례관리를 위한 목적을 넘어서고 있음
- 정부는 『정부 3.0』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DB를 민간과 공유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복지자원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단위 복지 공급의 격차, 지역단위 복지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 복지의 정보화를 통해서 복지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13.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282호 (2015-14) 발행일 : 2015. 05. 25

4] 복지자원 통합DB의 구조와 기능

- 복지자원 통합DB는 산재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을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각종 자원관리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임
 - 복지자원 통합DB는 공공자원 DB와 민간자원 DB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Data Warehouse를 지칭하며, 이때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은 제공주체의 속성 및 서비스 재원(財源)에 따라 구분됨
 - 복지자원 통합DB 내에서 복지자원은 제공주체와 제공서비스로 구분되며, 단일 제공주체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체계적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복지자원 통합DB의 구축 후 자원 정보량(量)은 급증하고 있으나, 자원 활용은 저조

5] 복지자원 관리의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

- 여전히 지역단위에서 복지자원 관리는 공공의 역할수행과 관련한 쟁점을 양산하고 있음
 -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 영역은 관련하여 가지는 행정적 권한으로 인해 자원 개발 과정이 권력과 연결된 과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복지자원 통합DB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자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으로서 기능을 구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상황임
 - 통계 추출 기능, 커뮤니티 기능, 정보 일괄다운로드 기능 등이 구현되었으며,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공개 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공공기능을 확대하는 한 방법임
- 지역사회 자원정보 체계구축을 위한 공공영역의 적극적 정보공개가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정보 표준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바우처정보시스템과 같은 여러가지 정보시스템에서도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4.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5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5.5)

1] 최근 동향

- 실물경기는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크게 둔화된 반면 금융 시장은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위안화는 전월수준에서 등락

- ◇ 3월중 산업생산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데다 수출도 3~4월 모두 큰 폭 감소
- 3월중 소비와 고정투자 성장세 둔화가 지속
 - 4월중 제조업 PMI는 전월과 동일하게 기준치(50)를 소폭 상회(HSBC 제조업 PMI는 2개월 연속 하회)한 반면 비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하락
- ◇ 4월 소비자물가는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였으나 하락폭이 다소 축소
- 3월 신규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50개 도시에서 전월대비 하락

- 3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보다 크게 하락(전년동월대비, 1~2월 6.8% → 3월 5.6%)하면서 2008.11월(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업종별로는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7.5% → 6.7%)된 데다 광업(4.2% → 1.4%), 전기가스수도업(4.0% → -1.1%)이 전월보다 크게 하락
-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과 동일한 50.1로 기준치(50)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중소제조업체 경기를 반영하는 HSBC 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0.7p 하락한 48.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
- 3월중 소매판매(명목기준, 전년동기대비)는 증가세가 둔화(1~2월 10.7% → 3월 10.2%)되었으며 실질기준(가격요인 제외)으로도 전월보다 하락(11.0% → 10.2%)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3월중 전월과 동일하게 1.4% 상승한데 이어 4월 들어서는 1.5%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2월 1.4% → 3월 1.4% → 4월 1.5%)
 - 이는 비식품가격 상승률이 전월과 동일(0.9%) 하였으나 식품가격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진데(2.3% → 2.7%) 기인
 - 3~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월에 비해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3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2월 -4.8% → 3월 -4.6% → 4월 -4.6%)
- 3월 신규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50개 도시에서 전월대비 하락하여 가격하락 도시의 수가 2월(66개)에 비해 16개 감소
 - 기존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48개에서 전월대비 하락하여 가격하락 도시의 수가 2월(61개)에 비해 13개 감소

14.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5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5.5)

- 70개 도시의 신규주택 단순평균가격(전월대비)은 0.2% 하락하여 전월(-0.5%)보다 하락폭이 감소*

◇ 3월중 통화상황은 M2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사회용자총액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신용공급 증가규모도 감소

- 4월중 단기금리는 완화적 유동성상황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장기금리는 물량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하락 반전
- 주가는 경기부양 기대감, 증시로의 자금유입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위안화 가치는 전월수준에서 등락

○ 3월말 M2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11.6%로 전월 및 예상치(각각 12.5%, 12.3%)를 상당폭 하회하였으며 3월중 신규 사회용자총액도 1.18조위안 증가하여 전년 동월(2.09조 위안) 수준을 큰 폭 하회

- M2증가율 둔화는 해외부문 유동성 환수*, 감독기관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은행간 자금운용 감소(전년동기대비 -1,564억위안), 경기둔화 등에 따른 신용공급 위축 등에 주로 기인

* 15.1분기중 금융기관 외환매입포지션(外匯占款)은 2,225억위안 감소(14.1분기중 7,548억 위안 증가)하였는데 3월중에만 1,565억위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용자총액(증가액)은 위안화 신규대출의 예상외 호조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른 부외거래 신용공급의 큰 폭 위축으로 3월중 그림자금융이 123억위안 증가(전년동월 +5,736억위안)에 그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감소

○ 4월중 단기금리는 인민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공급 지속*으로 자금 시장의 여유로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1분기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RP 7일물: 3월말 3.98% → 4월말 2.42%)

* 15.1분기중 인민은행의 단기유동성조작(SLO), 대기성여신제도(SLF), 중기대출제도(MLF) 등을 통한 유동성 신규 공급 규모는 각각 1,800억위안, 3,347억위안, 3,700억 위안에 달함

- 장기금리는 상당기간 상승세 지속에 따른 부담감이 점증하는 가운데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채 투자 허용* 등으로 물량 부담**이 완화되면서 하락 반전
(국채수익률 10년물 : 15.2월말 3.36% → 3월말 3.65% → 4월말 3.35%)

- 한편 인민은행은 1분기 중 적극적 유동성공급 등으로 시중자금사정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도 하락 폭을 확대함에 따라 유동성환수 위주의 공개시장 조작 기조를 지속

14.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5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5.5)

- 4월중 주가지수는 1/4분기 성장률 등 실물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4.20일 기준율 100bp 인하) 등 경기부양 기대감 및 증시로의 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4,500선을 돌파**하며 지난달에 이어 큰 폭 상승 (상해 +18.5%, 심천 +15.8%)
- 4월중 위안화는 전월의 무역수지 큰 폭 축소(2월 606억달러 → 3월 31억 달러), 자본유출 우려* 등의 절하 요인과 외환당국의 안정적인 위안화 가치 유지** 강조 등 절상 요인이 교차하며 6.20위안 내외에서 등락(4.30일 6.2028)

2] 향후 전망

- 실물경기는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2/4분기중 성장률이 6.8% 내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하반기 이후에는 각종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안정적 성장을 회복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데다 인터넷구매 확대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
 - 주택가격은 주거개선 수요가 많은 1급 및 일부 2급 도시의 경우 점차 안정 되겠지만 재고부담이 큰 3~4급 도시는 가격조정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향후 통화정책은 유동성공급, 물가,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간의 균형을 이룰 전망

15. 중국판 창조경제 ‘대중창업, 만인혁신’ 사상 최대의 창업붐 조성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2015.5)

① 중국 정부의 대중창업 만인혁신

- 혁신은 거의 모든 국가경제의 당면과제. 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이 없는 경제란 허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임. 최근 중국 정부의 혁신 캠페인은 혁신의 주체 세력으로 ‘만인(萬人)’을 상징하고 거기에 더해 일반대중의 창업까지 연결시킴으로써 다분히 중국적인 접근법을 채택했음. 리커창 중국 총리가 3월 정부공작보고에 공식 인용함으로써 ‘대중창업, 만인혁신’은 이제 정부의 공식 업무로까지 격상했음

② 창업 성과

- 출발은 비교적 성공적임. 중국 정부의 ‘1위안 창업’ 지원책은 회사등기 건수를 크게 늘려놓았고 대학생들의 창업열기는 학원가를 들썩이고 있음. 그러나 창업이 수익성을 갖추고, 일자리를 늘리며, 작은 혁신이라도 성공시키려면 수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함
- 무엇보다 중국경제의 최대의 강점이었던 저렴한 인건비 등 저비용구조가 약화되고 있음. 금융의 왜곡에 따른 높은 융자 코스트, 대도시의 높은 경영 인프라 비용, 선진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자본시장의 신뢰, 음성적인 준조세, 파산제도의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본격화된 창업 혁신 조류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정부가 과거와 달리 시장친화적인 창업 혁신 정책을 긴 호흡에서 펴고 있고, 창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술적 금융적 인적 인프라가 전보다 많이 성숙됐다는 점에서 ‘찾잔 속 태풍’과 같이 일과성 캠페인으로 지나가진 않을 것 같음
- 특히 샤오미 화웨이 등 로컬기업들의 자수성가형 성공사례가 잇따르면서 자금과 인재, 글로벌 기술역량이 집중되는 IT 산업 분야에선 적잖은 성과가 예상됨

③ 시사점

-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복마전 같은 곳임. 혜성처럼 나타난 유망기업이 몇 년 새 사라지기도 하고 알리바바와 같이 단숨에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전쟁터와 같은 시장임
- 이 같은 역동성에 전대미문의 창업 및 혁신붐이 더해진다면 중국시장과 중국산업의 경쟁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임

16. 지방재정위기관리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5. 5.20 ~ 2015. 6. 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악화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급작스런 재정긴축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결국 지방정부와 정부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재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위기단체의 기준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는 등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임. 특히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임
- 이에 현재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단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긴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회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5. 5.20 ~ 2015. 5.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신탁재산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18.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5. 5.14 ~ 2015. 5.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재정 갈등이 유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예산안 및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중앙관서의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바, 중앙정부 간의 협의로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19.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 입법예고기간 2015. 2. 4. ~ 2. 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015. 4. 8 제정 시행